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장종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672

발의연월일: 2024. 9. 5.

발 의 자: 장종태·김선민·김남희

이수진 · 김 윤 · 오세희

강준현 • 박희승 • 문진석

복기왕 · 조승래 · 이원택

소병훈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하여 국립대학치과 병원이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·연구와 진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 정하고 있음.

한편, 정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여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는데,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,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립대학치과병원의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·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억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2항, 제17조 등).

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"교육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"교육부장관이"를 "보건복지부장관이"로 하고, 같은 조제3항 중 "교육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한다.

제12조제3항 전단 중 "교육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한다.

제17조의 제목 "(출연금 등)"을 "(출연 또는 보조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보조하고, 치과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·설비에 사용되는 경비와 차관의 원리금상환의 경비는 치과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하되,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"를 "보조한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·사용 및 관리"를 "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출연, 보조 및 지원의 기준·관리"로 한다.

③ 정부는 치과병원의 사업과 운영 등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20조 전단 중 "교육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한다. 제21조제1항 중 "교육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한다.

제22조 중 "교육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한다. 제24조제2항 중 "교육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행한 행위 및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위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정관) ① (생 략)	제4조(정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치과병원의 정관을 변경할	②
때에는 <u>교육부장관</u> 의 인가를	<u>보건복지부장관</u>
받아야 한다.	,
제9조(임원) ① (생 략)	제9조(임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	②
이 되며 이사는 해당 치과병원	
장(이하 "원장"이라 한다), 관	
런대학의 치과대학장(치의학전	
문대학원장을 포함한다) 및 대	
학병원장, 기획재정부장관, 교	
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	
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	
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	
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	
각 1인, 해당 치과병원의 소재	
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	
·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부시	
장 또는 부지사(이하 "당연직	
이사"라 한다) 및 이사회의 추	
천으로 <u>교육부장관이</u> 임명하는	<u>보건복지부장관이</u>
사람으로 하되, 당연직 이사 외	
의 이사 중에는 병원경영에 관	

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인사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.

- ③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.
- ④ ~ ⑥ (생 략)
- 제12조(치과병원장) ①·② (생략)
 -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. 이 경우 이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.
- ④ ~ ⑦ (생 략) 제17조<u>(출연금 등)</u> ① (생 략)
 - ② 치과병원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사용되는 경비는 예 산의 범위 안에서 정부가 <u>보조</u> 하고, 치과병원의 운영비 및 시 설·설비에 사용되는 경비와 차관의 원리금상환의 경비는 치과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하되,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

③
<u>보건복지부장관</u>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치과병원장) ①・② (현행
과 같음)
③
<u>보건복지부장관</u>
,
④ ~ ⑦ (현행과 같음)
제17조(출연 또는 보조 등) ①
(현행과 같음)
②
<u>보조</u>
<u>한다</u> .

<u>보조할 수 있다</u>. <신 설>

- ③ (생략)
- 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·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0조(사업계획 등 보고)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치과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- 제21조(결산서의 제출 등) ① 원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「공인회계사법」 제 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 ·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정부는 치과병원의 사업과				
운영 등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				
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				
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				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				
른 출연, 보조 및 지원의 기준				
• 관리				
제20조(사업계획 등 보고)				
-보건복지부장관				
<u> </u>				
· 제21조(결산서의 제출 등) ①				
· 1/21그(근 단 기의 / 개글 · 0 / 년)				
<u>보건복지부</u>				
<u> 장관</u>				
② (현행과 같음)				

제22조(감독) <u>교육부장관</u> 은 치과	제22조(감독) <u>보건복지부장관</u>
병원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	
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	
명할 수 있다.	,
제24조(과태료) ① (생 략)	제24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	2
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	
교육 <u>부장관</u> 이 부과·징수한다.	보건복지부장관